

보도시점 2024. 4. 25.(목)
회의종료 후 별도 공지

배포 2024. 4. 25. (목) 08:00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하고, 통합지원으로 틈새 메운다.

-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 1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서 올해 총 131개 세부과제 추진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 및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 구축 등 과제 마련 -

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 전국 확대 및 무료법률지원 강화(1인 구조비 5→6백만원)
-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확대 배치('23년 25개소→'24년 38개소)
-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제한 대상기관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 추진
- ▶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 및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확대
- ▶ 폭력예방교육 통합 추진 및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 통합 실시

②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 ▶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 포함하도록 「성폭력방지법」 개정 추진
- ▶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탐지 및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요청시스템 구축 추진
- ▶ 온라인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 점검 및 투명성 보고서 검증 강화
- ▶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합성성착취물 범죄 집중 단속
- ▶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보급

□ 여성가족부는 25일(목)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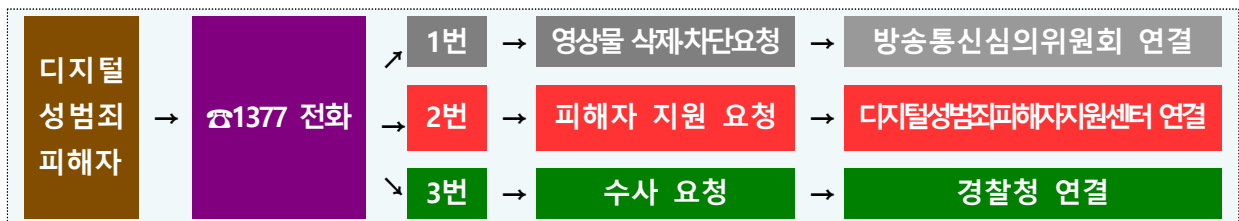
1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 제1호 안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년)’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으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총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23년 서울, ’24년 부산·인천·경기)하여 불법 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 (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 소관 부처·기관별 담당업무에 대한 종합 안내 및 신고내용에 따른 자동 연계 서비스 제공



- 아울러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를 전수 조사하여,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음란 영상의 고유한 특징값(DNA)을 추출하여 조치의무사업자 등이 차단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저장소

2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스토킹)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전국(’23년 6개소→’24년 17개소)으로 확대한다. 또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한다.

-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및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현장에서 잘 운용되도록 법무부-경찰청 간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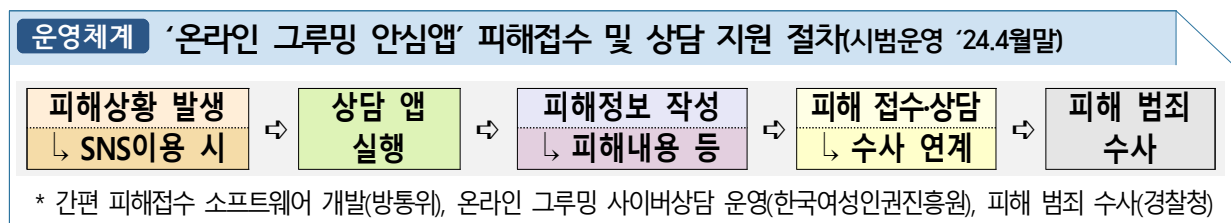
* △긴급응급조치 불응 시 제재조치 △온라인 스톱킹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 (가정폭력) 여성가족부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신설(250만원)하고,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 확대(1→2년)도 추진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전자소송을 사전에 동의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인한 주소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현재는 1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 매년 갱신 필요)

③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23년 25개소→'24년 38개소)한다.
- (성범죄자 관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④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 (권력형 성범죄)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사항을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안내하여 현장에서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 권력형 성범죄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23)에서 80%('24)로 강화한다.

- (문화·예술·체육)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예술 활동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상담-신고-조사-위원회 심의-구제조치 등 피해구제 절차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23.12월 개소)

-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절차적 문제(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영역별 제도개선 추진사항(문체부)

- ▶ (조사) 윤리센터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및 은폐 시 과태료 부과
- ▶ (재심) 윤리센터 각하·기각 결정에 신고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 ▶ (징계요구) 문체부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시한(90일)을 명기하고, 미 징계시 사유제출 의무화

- (국방)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24. 7월 예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피해자 상담·신고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상담·사건 통합관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 (통합지원) 여성가족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23년 2개소→'24년 5개소)한다.

-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며,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도 확대('23년 30개소→'24년 54개소)한다.

- (기반강화)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응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통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한다.
 - * 「양성평등기본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방지법」 각 시행령 개정 추진
- 한편,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와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합 실시 근거*도 마련한다.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 개정('24.3.26. 개정)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 (사전 차단 체계 마련)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한다.
 - 여성가족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하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 (수사 및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 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 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투명성 보고서* 검증을 강화하며,
 -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내용에 대하여 방통위에 제출하는 보고서
 -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하고,

-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 카카오톡, 라인, 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상담채널(디포유스, d4youth)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 (예방 및 교육 강화)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 주요 정책과제 변화
2.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요
3.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안건 요약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안건 요약

담당 부서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연 (02-2100-638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양현순 (02-2100-6306) 정유진 (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2-2100-6161)
		담당자	사무관	강동근 (02-2100-6162)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 주요 정책 과제 변화

정책과제	기본계획 수립(2020)	현재(2024)
디지털 성범죄	지원 요청	기관별 요청 방심위 (심의) 디성센터 (삭제) 112 (신고)
	수사	위장수사 법적근거 부재
	삭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18)
	공조	인터폴 등 형사사법 공조 위주
스토킹	제도	형사처벌 근거 부재, 경범죄로 처벌
	보호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부재
아동·청소년 성보호	상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 (전화, 사이버상담)
	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근거 부재
	재발 방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
	실태 조사	-

원스톱 ARS 체계 구축



위장 수사 도입·시행('21)

* 385건 실시, 1,028명 검거('21~'23)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특화상담소
(14개소)

(연계)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삭제지원시스템

공조채널 다양화

인터폴·유로폴, 글로벌 IT기업, 부다페스트 협약가입 추진,
美 실종착취 아동센터 업무협약 체결 추진

스토킹 처벌법 제정·시행('21)

*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24)

스토킹 방지법 제정·시행('23)

* 스톱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운영('24)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 앱(APP) 개발

☎ 피해내용 작성 >> 📞 접수·상담 >> 🚚 수사연계

온라인 그루밍
처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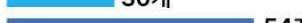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추진

유치원·학교·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



가족센터,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제공기관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23)

정책과제		기본계획 수립(2020)	현재(2024)
가정 폭력	재발 방지	-	가정폭력 현행법 체포, 접근금지 위반 징역형으로 상향('21)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개발('23)
	보호	-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23) 보호시설 동반 아동 자립지원금 신규지원('24)
성폭력	공공 부문	-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 의무화('21) 불이행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24)
	민간 부문	-	여성 외국인 근로자 긴급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21) 성희롱·성폭력 사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마련('22) *성폭력 피해자 범위: 사용자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직장동료 등
	국방	-	국방부 및 각 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 부서 신설('22) 성고충 전담 상담관 확대('21~'23) '21년  50명(군단급) '22년  103명(사단급) '23년  150명(사단급)
	교육	-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22)
	문화·체육	(중앙) 스포츠윤리센터 개소('20)	(지역)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센터 설치·확대('22~'23)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
추진 기반	예방 교육	유형별 개별 교육 실시 	통합 예방교육의 효과적 실시 근거 마련 추진 *기관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 명단 최초 공표('22)  *디지털성범죄 등 산동성범죄 예방교육 포함
	조사	성폭력, 가정폭력 개별 실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통합* 근거 마련 추진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통합 실시
	전달 체계	여성폭력 유형별 지원체계	(광역) 1366 통합지원단 5개소 설치 (기초)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확대 '19년  30개 '24년  54개

붙임2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 위원 구성 : 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구 분	구 성
위 원 장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위원 (15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경찰청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12명)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강동욱 한경국립대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교수, 김동현 청소년 특별회의 의장,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종숙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바수데비 성저초교 교사,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미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이서인 대한민국제향국민화여성회 회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나다 순)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등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학교·목욕탕·지하철·다중운집 행사장소 등 합동점검, 범죄다발지역 순찰 강화
- 디지털성범죄정보 전자심의시스템 운영(24시간) 및 원스톱 신고 ARS 운영
- '정상 촬영물'을 '불법 촬영물'로 오식별 최소화를 위한 공공 'DNA DB' 전수 정제 실시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력 제고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법무부) 및 NCMEC(美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 등과 핫라인 개설(여가부)

②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온라인 스토킹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운용 현장점검
- 스토킹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긴급주거지원사업 확대('23년 6개소→'24년 17개소)
-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1인 구조비 5백만원→6백만원)
- 스토킹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 마련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안내서' 보급
-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250만원)
-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안내 강화 및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기간 확대(1→2년)

③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지급요건 완화('23년 1년→'24년 6개월 이상 입소)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확대 배치('23년 25개소→'24년 38개소)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추진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시 제재조치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④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 기관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 단축(3→1개월),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시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시행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한 예술인 권리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스포츠윤리센터의 절차적 문제(조사불응, 조사방해 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스포츠 분야 인권감시관 활동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 국방분야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 구축('24. 7월 예정)
- 광역 단위 고난도 복합사례 지원을 위한 '1366 통합지원단' 확대('23년 2개소→'24년 5개소)
- 지역사회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폭력 피해 지원 노력에 대한 지자체 평가 반영 추진

① 사전 차단 체계 구축

- ▶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 포함하도록 '성폭력방지법' 개정
-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 제출 시 처분 조항 신설('25~)
- ▶ 인공지능 기반으로 탐지된 영상의 삭제 요청을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25~)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센터」 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 연계('24~)
- ▶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구축·운영('24~)

② 수사 및 처벌 강화

- ▶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 상 행위로 확대 추진('24~)
- ▶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한 허위영상물 유포 등 범죄 집중 단속('24~)
- ▶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력 강화를 위해 NCMEC(美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 등과 핫라인 개설('24~)
- ▶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투명성보고서 검증 강화('24~)

③ 피해자 보호·지원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 설치·운영에 관한 '성폭력방지법' 개정('24~)
- ▶ 지역특화상담소 확대·운영('24. 14개소→전국 광역지자체로 확대)
- ▶ 인공지능을 이용·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 설치('24~)
- ▶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앱 개발·운영('24~)
- ▶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상담 서비스 제공('24~)

④ 예방 및 교육

- ▶ 학교, 공공기관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행점검 강화('24)
- ▶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아동·청소년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24)
-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한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활성화('24)
- ▶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인식 등 디지털 성범죄 정책 국민 인식 조사('24)